■ 교직원 복무규정 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정 1986.12. 3 / 개정 1987. 4. 1 / 개정 1988. 8. 1 / 개정 1989.12. 1 / 개정 1990. 5. 1 / 개정 1994. 3. 1 / 개정 1994.12.22 / 개정 1997.10.22 / 개정 1998. 3. 1 / 개정 1998.10.19 / 개정 2000. 3. 1 / 개정 2001. 6. 1 / 개정 2001.11. 1 / 개정 2002. 1.12 / 개정 2003. 6.23 / 개정 2008. 3. 1 / 개정 2009. 8. 7 / 개정 2010. 3. 1 / 개정 2015. 1.28 / 개정 2016. 6.16 / 개정 2019. 9. 1 / 개정 2020. 2.19 / 개정 2022.10. 1 / 개정 2022.10.28 / 개정 2023. 3. 1 / 개정 2023.11.16 / 개정 2025. 2.23	제정 1986.12. 3 / 개정 1987. 4. 1 / 개정 1988. 8. 1 / 개정 1989.12. 1 / 개정 1990. 5. 1 / 개정 1994. 3. 1 / 개정 1994.12.22 / 개정 1997.10.22 / 개정 1998. 3. 1 / 개정 1998.10.19 / 개정 2000. 3. 1 / 개정 2001. 6. 1 / 개정 2001.11. 1 / 개정 2002. 1.12 / 개정 2003. 6.23 / 개정 2008. 3. 1 / 개정 2009. 8. 7 / 개정 2010. 3. 1 / 개정 2015. 1.28 / 개정 2016. 6.16 / 개정 2019. 9. 1 / 개정 2020. 2.19 / 개정 2022.10. 1 / 개정 2022.10.28 / 개정 2023. 3. 1 / 개정 2023.11.16 / 개정 2025.2.23 / **개정 2026.9.18**	
제 4 장 휴일 및 휴가	제 4 장 휴일 및 휴가	
제16조(휴일) 본 대학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 생략 3. 근로자의 날 4. 생략	제16조(휴일) 본 대학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(현행과 같음) 3. **삭제** 4. (현행과 같음)	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(2026.4.30)
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략)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.(신설: 2020.2.19)(개정:2025.2.23)	제21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최초 **4일**은 유급으로 한다.(신설: 2020.2.19) (개정:2025.2.23) **(개정: 2026.11.27)**	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(2026.11.27 시행)
제22조(산전·산후휴가) ① ~ ② (생략) ③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교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인공 임신중절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: 2016.6.16) 1. 유산 또는 사산한 교직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~ ⑧ (생략)	제22조(산전·산후휴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교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인공 임신중절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신설: 2016.6.16) 1. 유산 또는 사산한 교직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**15주 이내**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**10일**까지 **(개정: 2026.9.18.)** 2. **삭제 <2026.9.18>**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~ ⑧ (현행과 같음)	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(2025.2.18 시행)
제23조(배우자 출산휴가) ①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,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5.1.28) (개정: 2020.2.19) (개정: 2025.2.23) ② 전항의 휴가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. (신설: 2025.2.23)	제23조(배우자 출산**전후**휴가) ① 교직원이 배우자의 **임신 및**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배우자 출산**전후**휴가를 부여하며,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5.1.28) (개정: 2020.2.19) (개정: 2025.2.23.) **(개정: 2026.9.18.)** ② 전항의 **배우자 출산전후**휴가는 **신청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,**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. (신설: 2025.2.23) **(개정: 2026.9.18)** **③ 교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부여하며,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.(신설: 2026.9.18)** **④ 전항의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(신설: 2026.9.18)**	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(2026.9.18 시행)
제27조(휴가기간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. 다만,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27조(휴가기간중의 **휴일)** 휴가기간중의 휴일(제16조 휴일)은 그 휴가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. 다만,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휴일과 공휴일의 의미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
	부 칙 **이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** **(경과사항) 제21조 6항은 2026년 11월 27부터 개정, 시행한다.**	